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. 1. 9 선고 2018가단477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9. 10. 31 선고 2019나53525 판결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. 1. 9 선고 2018가단4774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수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12. 5

판결 선고 2019. 1. 9

주문

【】ZC1. 피고는 원고에 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2014. 9. 29. 접수 제312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. 8. 10. 변제를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되는 사실

가. C은 2013. 2.경부터 2017. 9. 4.까지 합계 62,980,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(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)하고, 2013. 12. 24.부터 2018. 8. 10.까지 피고에게 합계 97,540,000원을 이 사건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.

나. 피고는 2014. 9. 29. ○의 배우자인 원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,000,000원,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(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).

다.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설정된 것이고, 위 와 같이 C이 2018. 8. 10.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위 차용원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무는 원고 주장에 따라 2018. 8. 10.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C과 원고에게 계좌 송금으로 지급한 대여금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대여금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을 제3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 또는 C이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차용증(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)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갑 제6, 7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원고 또는 C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1) 피고가 C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원고 또는 C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.

2)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에서 피고가 한 '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 현금으로 수십 만 원씩 15회에 정도 대여한 적이 있다'는 진술에 비추어 수백에서 수 천 만 원이 차용금으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금증서는 그 현금 대여의 증거가 될 수 없다.

3) 이 사건 차용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작성된 차용금증서는 몇 장에 불과하고,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금증서는 위 차용원리금 정산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.

다. 소 결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.8. 10.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 수 응

별지